

## 약관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안전서비스통장 거래약정서』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(구)외환은행 약관에 통합내규 반영하여 구행명 삭제후 통합약관으로 개정  
(구)하나은행 관련 약관 해당사항없음

개정 전 (구.외환은행)	개정 후	비 고
<p><b>제1조 (대상 계좌)</b> 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는 은행이 정한 예금·<u>신탁</u>으로서 <u>예금주(수익자)</u>가 신청한 본인명의로의 계좌로 한다.</p>	<p><b>제1조 (대상 계좌)</b> 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는 은행이 정한 예금으로서 <u>예금주</u>가 신청한 본인명의로의 계좌로 한다.</p>	(통합내규와 일치_ 신탁제외)
<p><b>제2조 (입·지급거래) (생략)</b></p>	<p><b>제2조 (입·지급거래) (좌동)</b></p>	
<p><b>제3조 (지급거래시 본인 확인)</b> 지급거래시 <u>예금주(수익자)</u>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3조 (지급거래시 본인 확인)</b> 지급거래시 <u>예금주</u>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</p>	(상동)
<p><b>제4조 (면책)</b>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<u>예금주(수익자)</u> 본인임을 확인하고, 지급청구서상의 인감 및 비밀번호가 신고된 인감 및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예금·<u>신탁</u>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장, 카드, 인감 등의 분실, 비밀번호의 누설,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<p><b>제4조 (면책)</b>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<u>예금주</u>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청구서상의 인감 및 비밀번호가 신고된 인감 및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<u>예금</u>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장, 카드, 인감 등의 분실,비밀번호의 누설,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</p>	(상동)
<p><b>제5조 (준용)</b>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(구 <u>외환은행</u>)과 저축종류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<b>제5조 (준용)</b>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<u>예금거래기본약관</u>과 저축종류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(구 행명 삭제)